

인사발령을 위한 서류(제6조제1항 관련)

발령 구분		필요서류	비고
신규채용		인사기록카드 1통	전체사유가 기재된 것 국·공립병원장 및 종합병원장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병적증명서 1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채용 신체검사서 1통	
		신원조사회보서 1통	
		신원진술서 3통	
		(경정 이상은 4통)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승진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승진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면직	의원면직	사직원서(자필) 1통	
	직권면직	징계위원회동의서·경위서·직권면직 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당연퇴직	판결문 사본 1통	
	정년퇴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징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추서		공적조사서 1통	
		사망진단서 1통	
		사망경위서 1통	
휴직 및 복직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현역증서 사본·임영통지서 사본 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발행
직위해제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1통	

비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해야 한다.